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4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의회사무처의 설치, 지휘·감독체계 및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조문 및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밖에 사무처의 설치 및 지휘·감독체계에 관한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5. 13. ~ 5. 18.)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사무처의 설치)”를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p> <p>②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p> <p><신 설></p> <p>제3조(사무처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p> <p>③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 제8조 (생략)</p>	<p>제2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설치와 사무처장의 직급규정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여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설치와 사무처장의 직급규정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6급 박미진(☎ 2133-6633)